

# 판교창업존 입주 협력기관 및 투자사 연장평가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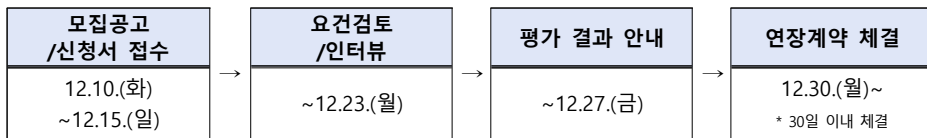
판교창업존 입주 협력기관 및 투자사의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 입주 연장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0일  
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

※ 본 공고는 창업존에 입주한 “협력기관, 투자사” 연장평가 공고로 **요건검토 및 기관 인터뷰를 통해 입주 연장 여부를 결정**하여, 기 입주 공간의 **최대 1년** 연장 계약을 체결합니다.  
 ※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협력기관 및 투자사께서는 인터뷰에 필요한 ①**연장신청서**와 ②**실적보고서** 및 **운영계획서** ③**증빙서류**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 \* **인터뷰 일정** : '24.12.16.(월)~12.23.(월) 중 경기센터 담당자 안내 예정

## 1. 연장평가 개요

- (평가목적)** 창업존에 입주한 협력기관·투자사의 계약 만료 시점(24.12월) 도래에 따라 실적, 향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주 연장여부 결정
- (평가대상)** '24년 12월 이내 입주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협력기관·투자사 중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협력기관·투자사
- (연장조건)** 기 입주공간의 최대 1년 계약기간 연장  
 \* 계약기간은 계약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, 평가 내용에 따라 1년 미만 연장도 가능
- (평가절차)**

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 2. 신청 및 접수

- (공고 및 신청기간)** '24. 12. 10.(화) ~ '24. 12. 15.(일) 23:59 까지  
 \* 입주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[첨부2] 퇴거확약서 이메일(sey@ccei.kr) 제출 **必**
- (신청방법)** 이메일(sey@ccei.kr) 신청·접수
- (제출서류)** 사업계획서, 운영계획서, 실적 증빙 등

서식	서류명	필수여부	제출 방법
1	연장신청서	필수	제공된 양식 작성 후 1개의 파일로 제출
2	실적보고 및 운영계획서	필수	
3	개인정보수집동의서	필수	
4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	필수	
5	실적 증빙서류	해당 시	해당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

\*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## 3. 평가 세부내용

### 평가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**4개 요건 모두 충족 필수**

< 요건검토 항목 >

구 분	세부내용
1) 국세 및 지방세	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
2) 채무불이행	- 채무불이행 여부
3) 휴폐업	- 휴폐업 여부
4) 임대·관리비	- 창업존 임대관리비 미납여부 (연장평가 <b>접수마감일까지</b> 연체료를 포함한 전액 완납 시 요건충족)

- ② **인터뷰** : **요건검토를 통과한 협력기관·투자사를 대상으로** 인터뷰 실시
  - **(인터뷰 방법)** 기관 대표자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제출 서류의

사실 여부 확인, 실적 및 창업준과의 향후 협업 계획 관련 질의응답 진행 (50분 내외)

- (인터뷰 항목) 기관 역량, 지원 실적, 향후 사업 협력 및 활성화 계획 등

< 인터뷰 항목(안) >

인터뷰 항목	세부내용
기관역량	- 사업계획, 재무구조, 보유인력 - 창업기업 발굴/투자/보육 실적 - 지원 프로그램/펀드 결성 현황
입주사 지원실적	- 창업준 입주사 대상 투자유치/투자검토 내역 - 입주사 교육, 멘토링, 협업, 미팅 등 보육 및 성장지원 실적 - 입주사 대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지원 실적
창업준 협력실적	- 입주사 투자 지원 사업 참여도(피치덱 제작, 멘토링, IR 행사 등) - 네트워킹 참여 등 기업성장 프로그램 협력도 - 창업준 인프라 활용도, 사업 협력 제안 이력 - 기업 선발 심사 참여 및 지원(투자지원 사업, 입주사 선발 등)
향후계획	- 입주사 대상 프로그램 선발/추천 - 향후 창업준 사업 연계 등 협력 지원 - 입주사 대상 투자유치(투자건수, 투자금액 등 목표수치 제안) - 창업준 물적, 인적 인프라 활용 계획

□ **평가지표**

구분	평가항목	배점	비고
입주사 지원실적	· 직접투자/투자연계건수,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, 미팅/멘토링 건수 등	20점	정량 (20%)
기관역량	· 사업계획, 재무구조, 보유 인프라, 인력의 전문성 등	20점	정성 (80%)
창업준 협력실적	· 창업준 프로그램 참여도, 입주 공간 사용도, 협력 제안 등	20점	
향후계획	· 창업준 협력 및 활성화 계획, 투자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,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	40점	

\* 70점 이상 득점 시 연장 승인

**3. 신청 및 접수**

- (공고 · 신청기간) '24. 12. 10.(화) ~ '24. 12. 15.(일) 23:59 까지

\* 입주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[첨부2] 퇴거확약서 이메일([semy@ccei.kr](mailto:semy@ccei.kr)) 제출 **必**

- (신청방법) 이메일([semy@ccei.kr](mailto:semy@ccei.kr)) 신청·접수

-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, 운영계획서, 실적 증빙 등

서식	서류명	필수여부	제출 방법
1	연장신청서	필수	제공된 양식 작성 후 1개의 파일로 제출
2	실적보고 및 운영계획서	필수	
3	개인정보수집동의서	필수	
4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	필수	
5	실적 증빙서류	해당 시	해당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

\*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## 4. 안내사항

### □ 연장평가

- 인터뷰는 대표자 참석이 원칙이며,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대리인 참석 시 **위임장 제출**
- 협력기관·투자사별 인터뷰 시간 안내 이후의 일정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협력기관·투자사 및 경기혁신센터 간 협의에 의한 변경은 가능
- **협력기관·투자사가 공고문에 위배**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**선정취소, 강제퇴거**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### □ 평가결과

- **(연장계약) 연장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**에 연장계약 체결

#### [판교 창업존 운영규정]

**제11조(입주기간 및 연장)** ⑤ 계약 갱신이 결정된 때에는 계약입주자와 관리기관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 기간 내에 입주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아 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- **(계약종료) 연장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**에 퇴거
- 계약 만료에 따라 입주 기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전 협의에 의해 퇴거일 유예 가능

### □ 문의처

- **(담당자)**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허브팀 이세미 주임
- **(연락처)** 031-780-9067 / [semy@ccei.kr](mailto:semy@ccei.kr)